

찾기 쉬운

생활법령정보 Q&A

글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

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(http://easylaw.go.kr)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,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『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』에서는 **2025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,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**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.

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 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『**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** 웹페이지 **http://easylaw.go.kr.** 모바일앱 **Smart 생활법률**』에 접속하셔서 '백문백답'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KOR 법 제 처 www.moleg.go.kr

공연장 안전관리

Q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,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?

A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은 내화소재를 사용해야 하고,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.

방화막 설치 의무

- "방화막"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).
-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7제1항 본문).

방화막 성능기준

-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6제1항).
  -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
  -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
  -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
  - 「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」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

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
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7제1항).

1.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
2.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
   - ☑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(프로시니엄)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

☑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

☑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

■ 위 2.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6제2항).

위반 시 제재

■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(「공연법」 제33조제1항제5호의3).

■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연법」 제43조제1항제3호).

Q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.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,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?

A 아닙니다.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

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, 비상구(非常口),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(이하 "소방시설등"이라 함)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제22조제1항 전단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).

자체점검의 종류

■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).

- 작동점검: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
- 종합점검: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「건축법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

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

■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종합점검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 · 제3호).

■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 · 제3호).

- 작동점검: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(최초점검은 제외)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,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- 종합점검: 공연장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,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

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

■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).

- 소화펌프(가압송수장치를 포함), 동력 · 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(비상전원을 포함)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
-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
- 소화배관 등이 폐쇄 · 차단되어 소화수(消火水)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
-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

위반 시 제재

■ 소방시설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

KOR 법 제 처
www.moleg.go.kr

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1호).

■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제4호).

Q 공연장 안전관리비를 책정 중인데,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나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?

A 네, 안전관리비는 보호장비의 구입, 안전 관련 보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을 지급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안전관리비 계상 의무

■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운영비의 1% 이상을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안전관리비"라 함)으로 계상해야 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2제1항 본문 및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2제1항제1호).

안전관리비의 사용 용도

■ 안전관리비는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2제2항).

-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
-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- 보호장비의 구입
- 「공연법」 제11조의4에 따른 안전교육과 그 밖의 안전교육 및 훈련
- 「공연법」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의 안전진단과 그 밖의 안전점검
- 안전 관련 보험

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

■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2제3항제1호).

KOR 법 제 처
www.moleg.go.kr

위반 시 제재

■ 안전관리비를 공연장운영 또는 공연비용에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연법」 제43조제2항제1호의2).

Q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며, 그 대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.

피난안내 조치 의무

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5제1항 참조).

피난안내도의 비치

■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 다만,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 가목·나목).

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

■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다목).

-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·피난통로·비상구·하강기·피난사다리 등의 위치
-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- 소방시설(소화기·소화전·휴대용 비상조명등 등)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
- 피난안내도의 위치(현재 위치 표시)

•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

피난의 안내

■ 피난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,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·나목).

■ 피난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다목).

-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·피난통로·비상구 등의 위치
- 구획된 실(室)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- 공연의 특수상황(화염,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)에 대한 사전 안내
- 장애인·노인·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
-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

위반 시 제재

■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연법」 제43조제4항제1호).

Q 제가 운영하는 공연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,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. 사고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려고 하는데,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
A

공연장운영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, 사고 발생 경위, 사상자 등 피해 상황,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, 향후 조치계획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화·팩스·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
중대한 사고의 보고 의무

■ 「공연법」 제11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공연장운영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연장의 사용중지 등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6제1항 및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6제1항).

-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사고
-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인 사고
- 공연 중에 화재나 무대시설 등의 낙하·추락·전도(顚倒) 등에 의한 시설파손으로 공연이 중단된 후 공연이 재개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복구하기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

중대한 사고의 보고 방법

■ 공연장운영자는 위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전화·팩스·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합니다(「공연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5).

-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
- 사고 발생 경위
- 사상자 등 피해 상황
- 사고 후 취한 재해예방조치 내용
- 향후 조치계획

■ 공연장운영자는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(「공연법」 제11조의6제2항 및 「공연법 시행령」 제9조의6제2항 본문).

위반 시 제재

■ 중대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공연법」 제4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).

키워드 공연장, 콘서트장, 안전관리, 방화막 설치, 내화소재, 성능기준, 구조내력, 소방시설, 자체점검, 작동점검, 종합점검, 안전관리비, 인건비, 보호장비, 중대사고, 인명피해, 시설피해, 파손, 과태료